

이 러 무 생 각 한 다.

한약판례규정(초안)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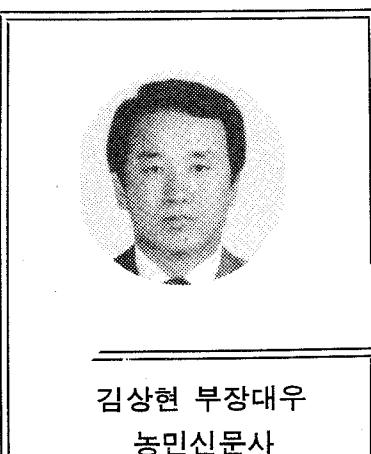
보건사회부(약무정책과)는 지난 8월 18일 한
국 약관리규정(안)을 마련
했다. 보사부의 이번 관
리규정은 약사법 제32조
제4항 및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
항 제57조 제1항 제10
호 및 제12호)에 따른
것으로, 보사부는 이 조
안(草案)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하반기 최
종 확정할 방침으로 알
려지고 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여론수렴과정은 관
리규정을 확정한 뒤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최소
화 내지 사전방지해 보
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
해돼 관리규정에 대항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

사연하는 생약·원생약 약용작물을 말한다. 이밖에 학계에선 한약을 한방학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최근 목피(草根木皮)를 원료로 한 탕탕(湯藥)·음(飲)·전(煎)·주(酒)·산(散)·환(散)

생산자증명우수은 타사행정의 표본

둘째, 한양재의 수급 조절이나 규격화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작업은 보사부보다 농협수산부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다. 보사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한약으로 제조되거나 이전의 한약재를 농산물을 이용하여 있다. 이를 5월 27일 한 농민이 보사부에 물의 한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도 보사부는 『농민이 재배 또는 채취한 생약의 삼품성을 가의 한 관계자는 규격화사업까지도 앙한다는 것이 계의 주장이다. 보사부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사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도 모순



김상현 부장대우
농민신문사

다섯째 만약 위원주를 조전할 수 있다면 관리규정 제8조에 제2항이 「출신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는 부분을 3분의 2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위원주의 구성원으로는 생산농민에 불리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민관계자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관리규정 제9조에서 「한국재에 한 유통기계 등을 조

규격화작업 농림수산부가 맡는것이 효율적
한약재수입, 생산자 단체가 물량 총괄해야

하지만 그 단체들은 그 데를 농민들이 출판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종·팔동 수급 조절용 농산물이 수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수입으로 편리를 입은 생산자 단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이 갖고 있다. 이는 수입으로 인해 조달에 재투자하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한자에 도 바로 이같은 배려차 수급이 조절해야 한다. 여덟째, 관리규정부 치에선 국내에서 재배 또는 채취된 한자재의 경우 사용기한을 포장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한약업자가 자가규정화를 위해 매입률을 때는 그 매도자로부터 음, 동사무소장이 한 생산자증명을 확인한 뒤 그 사본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전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자재는 규제사항이다. 우선화이나 이 부분은 사문화(死文化)될 가능성이 높아 전조된 상태로 사용기한을 1년으로 한 것은 시장의 유통현황과 다소 동떨어지고 있다. 완전히 거래되고 있는 학자들은 볼통 건조후 2~3년짜리 유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60~70대 고령의 농민들이 생산자증명서를 발급해준 면서 한약재를 팔기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자증명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구시(舊事求是)에 바탕을 두지 않은 턱상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받을 부분이다.